

부산직할시사하구조례제 호

부산직할시사하구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 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안

부산직할시사하구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조례 제 56호, 1988. 5.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적용시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